

양계경리실무

송재만
(소신중계원)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그것이 곧 판매되어 매출 원가라는 손금으로 계상 될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 원가의 결정은 직접 손금으로 계상한 거래들에 못지않게 중요한것이다.

세무 회계상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다.

-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 자산은 그 매입원가.
- 2) 자기가 제조또는 생산한 재고 자산은 그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
- 3) 기타의 경우의 재고자산은 그 취득 원가로 되어 있다.

매입한 재고자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원가이며 매입원가라 하면 그 구입 댓가에 인수운임, 하역비, 구입 수수료, 기타 해당 재고자산의 구입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재고자산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예컨대 재고자산의 종류가 서로 상이 한것을 동시 구입하였을때의 부대비용은 그때 그때 해당 재고자산에 적당히 배부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와같은 부대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치 않고 부가원가계정인 매입운반비 계정으로 처리 하였다가 사업년도 말일에 일괄적으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취득원가에 산입 할수 있다.

(차변)매입 운반비×××(대변)현금×××

가) 구입 댓가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방법.
나) 구입 댓가가 극히 적은 재고자산에는 배부하지 않고 큰것에만 적당한 기준에 의하여 배부하는 방법.

다) 부대비용을 일괄하여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의 비(比) 또는 당기 매입액과 기말재고 자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세분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에 배부하는 방법

(참고)

상장(上場)법인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제10조 3 항에 따르면 매입운임, 매입 보관비 중 매입 품목, 별로 배부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총매입액에 부가(附賀)하여 기재하되 전액을 당기의 매출원가에 부담시킨다고 하였으나 세무회계상 전액 매출원가인 손비(損費)로 하는 것을 인정치 않는다.

작업폐물(作業廢物)의 회계처리

공기업에서는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재료를 가공하거나 소비할때에 생기는 사용재료의 폐물을 작업폐물이라하는데 목재 가공업에 있어서의 대패밥, 제혁업(製革業)에 있어서의 가죽 부스러기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처리에 있어 작업 폐물은 이미 재료비로 차리되어 있으면서 제품으로 압된 것이므로 작업폐물의 가격이 클때에는 가격을 제조원가 계산표에 주기(朱記)하여 폐물이 생긴 당해제품의 재료비 또는 제품원가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

양계에 있어서도 이같은 작업폐물(도태계)

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컨대 1천수의 초생추를 입주하여 성계가 될때까지 5%에 해당하는 50수가 도태 되었을 경우의 회계 처리는

- 1) 초생추 구입가격 1000수×200원 = ₩200,000
- 2) 방역비 및 기타 약품대 ₩150,000
- 3) 사육제 비용 ₩800,000

이라 개정할때

가) 도태없이 완전성계가 되었을때에는

$$\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text{입추수}} = 1\text{수당(성계) 가격 } ₩1,150$$

(차변)성계 ₩1,150,000 (대변)제조(육성계정) ₩1,150,000

으로 처리되겠다.

다) 5%의 도태를 손비처리 한 경우

(차변) 성계 ₩1,092,500(대변) 제조 1,150,000 사고손실 ₩57,000

즉 사육 완성제 950수×제조단가 ₩1,150 = 1,09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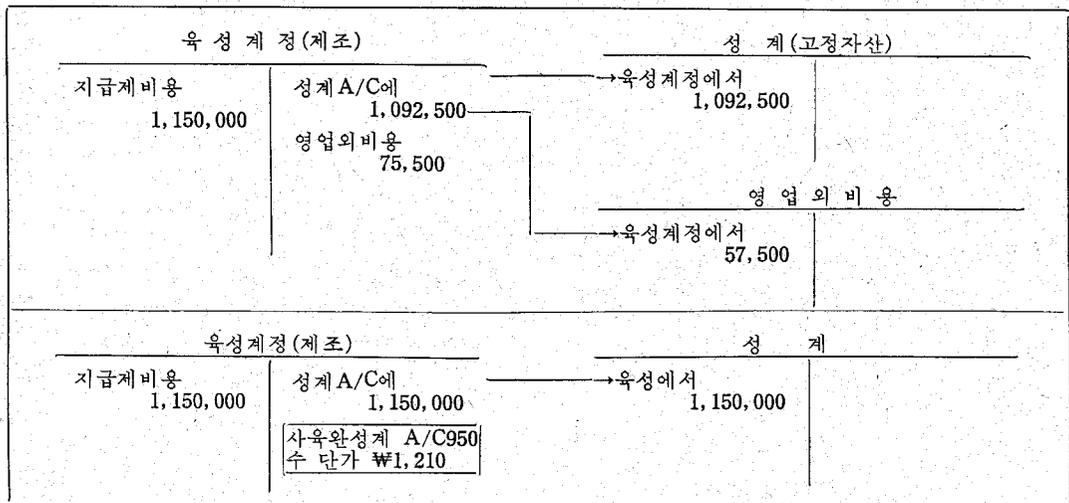
도태 50× " " = 57,500

다) 초생추 1,000수를 성계시까지 사육하기 위하여 소비한 총비용은 ₩1,150,000이다 이때 5% 폐사를 손비처리 하였을 때와 총비용을 완성제 950에 산입하였을 때와 손익계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바.

(차변) 성계(950수) ₩1,150,000 (대변) 제조 ₩1,150,000

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겠다.

이 관계를 계정에 표시하여 보면



(주) 판매의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성장자산 즉 입목양식의 조개, 잉어, 닭, 돼지 등의 취득원가의 결정은 실무상 어려운 문제점들이 따르고 있다.

우선 당해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볼것이 나는 당해자산의 취득 목적이 대상물의 판매에 있으나 아니면 직접 대상자산의 판매보다는 이의 성장으로 얻어지는 번식물(병아리, 돼지새끼)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자는 재고자산으로 후자는 고정시설로 간주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재고자산으로서의 성장자산

은 번식시점까지의 사육비등 부대비용을 그자산의 취득 원가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 또는 생산품, 의 원가에 계상함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당해자산의 번식과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성장자산은 번식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그 이후의 비용은 생산품 제조원가에 처리함이 타당할것이다.

증여(增與)에 의한 재고자산취득

증여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비한 경제적 재화가 없을뿐더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증(受贈)일 현재 재조할 필요가 기준으로 그 취득원가로 하는 도리 밖에 없다.

즉 그 자산을 받은 날에 당해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격에서 매입부대비용의 예정액을 합하여 취득 원가로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시가 수당 ₩200의 초생추 1,000 수를 모 부화장에서 수증하고 예정운반비 ₩3,000 인배에 회계 처리는

(차변) 초생추 ₩203,000 (대변) 수증익 ₩203,000(영업의 수익)

그러나 자기가 매입하는 거래처로부터 매입량, 거래실적에 따라 소위 할증금 또는 도금으로서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덤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 취득 원가는 없으므로 이러한 취득원가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당초 매입상품(초생추) 수량만을 늘리고 새로운 취득에 따르는 회계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덤으로 받은 상품이 판매 되었을 때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무상으로 받는 자산은 그것을 받은 시점에서는 수익도 없고 또 취득 원가도 없는 것이다.

재고 자산의 평가

판매업자나 제조업자등의 경우에 필요 경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원가라 할수 있다. 이 매출원가의 계산은 그 년도에 판매된 개개의 상품 또는 제품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종류의 거래시마다 개별적으로 원가를 계산함은 사실상 곤란 하므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의해 그 년도의 매출원가를 일괄 계산하는 방법에 취하고 있다.

1) 판매업의 매출원가

(기초상품 재고액 + 당기 매입액) - 기말재고액

2) 제조업의 매출원가

(기초제조 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 재고액

이와 같이 매출원가의 계산은 상품또는 제품의 년도 재고액의 평가에 따라 변동하게 되므로 매출 총이익과 기업 손익의 계산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는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그 평가방법과 신고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범위(소법시행령 74조)

재고자산이라함은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 1) 상품과 제품(부산물과 작업폐물 포함)
- 2) 반제품과 재공품(미완성 제품)
- 3) 원재료
- 4) 저장품
- 5) 자기가 양식, 채취, 채모한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광산물 등
- 6)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 7) 기타 위에 열거한것에 준하는 자산.

재고 자산의 평가방법(소법 시행령 76, 78)

각 년도의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 자산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납세자는 이들중에서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지 자유이다.

- 원가법 (취득 가격에 의한 평가)
 -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 3) 후입선출법 4) 단순평균법
 - 5) 총평균법 6) 이동평균법
 - 7) 최종 매입원 가법
 - 8) 매출원입법
- 시가법 (년도말 시가에 따라 평가)
- 저가법 (취득 가격 또는 시가중 저자에 따라 평가)

위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① 제품과 상품 ② 반제품과 재공품 ③ 원재료 ④ 저장품 ⑤ 기타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종류별 사업장별로 각각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를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사업종목별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가장하고 제조원가 보고

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정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자유로이 선정변경 할수 있으나 재고 자산의 평가방법 여하는 법인의 기간손익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법인이 적용할 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은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재 고 자 산 평 가 방 법 신 고 서			처 리 기 간
			즉 시
신 고 인	(1) 본점 소재지		
	(2) 법 인 명		
	(3)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4) 대표자 성명		(5) 영업자납세 번호
신 고 내 용			
평 가 방 법	(6) 상품 및 제품		
	(7) 반제품 및 재공품		
	(8) 원 재 료		
	(9) 저 장 품		
(10) 설립일 또는 수익 사업 개시일		19	
<p>법인세법 제 29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 9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세 무 서 장 귀 하</p>			
<p>첨부서류: 없음</p> <p>이 신고서는 무료배부 합니다.</p>			<p>수 입 인 지</p> <p>없 음</p>

3006-12-15A (1)
1971. 12. 16 승인

19mm×268mm
신문용지 50g1m²